

## I. 반론보도청구사례

###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4. 8. 31.자 판결 (2002나14114)

대 법 원 2006. 11. 23.자 판결 (2004다50747)

####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2006년 11월 23일 여○○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심판청구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동아일보사 등 4개 신문사가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원심에서는 반론보도내용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허

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신청인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를 배척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원문보도 중 일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중 일부 혐의사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도내용 중 일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에 증폭된 관심에 편승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56 ~ 95면 참조).

## 2심 판결문

사 건 : 2002나14114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항소인 : 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준 범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릉, 김 태 수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 광 명, 최 세 련

4.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한 남 구, 박 원 균, 이 지 은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7. 20.

판 결 선 고 : 2004. 8. 31.

주 문 : 1.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1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1-1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2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30면에 별지 제1-2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26면에 별지 제1-4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만약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1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2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3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4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취소재판보도등 신청취지 :**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2.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게 각 10,000,000원,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신청인이 ○○상고를 졸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판단부분**

##### **가. 피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일부 보도내용은 피신청인들이 보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신청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기하여 취소재판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

(1)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정기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이하 위 법률을 '정간법'이라 한다),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대적 상황하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의 일환으로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반 시민이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언론의 사실보도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7193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등 참조), 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면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의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반론권제도는 빠른 전파속도와 넓은 도달범위를 가진 대중매체의 속성에 대항해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고,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참조).

(4)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심리로 반론보도청구권제도의 생명인 원문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간법 및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

판하도록 하되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내용, 특히 신청인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거나 이용호의 부실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개입하여 로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이용호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등은 이미 관련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인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형식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원문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반론보도문의 진실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에서의 ‘사실’은 민법 제764조와 제750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그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진실’과는 다른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거부사유로서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의미는 그 주장 내용이 사회 보편적인 경험칙이나 역사적 사실, 자연과학적인 현상,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나 공식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교양을 갖춘 독자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에서의 ‘사실’의 의미를 위와 같이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반론보도청구가 있는 경우 결국 원문보도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중 어느 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조사 등을 통한 심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원문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신속성의 요청이 몰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정보도청구권과 구분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6, 7, 8,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 ○○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한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이용호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청탁비조로 금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호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이용호로부터 주식회사 ○○실업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주식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7. 25.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문 보도 중 일부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중 일부 혐의사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에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 있고, 반론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신청인들이 관련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사후에 게재하였거나, 원문보도 자체의 내용 중에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인의 반론청구내용과 동일한 반박내용을 함께 기사화 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이 진실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반론보도청구의 거부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란 형식적인 권리인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 내지는 악용으로부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거부사유인 사실성 여부의 판단이 매우 형식적인 요건임에 비추어 반론보도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나 언론이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종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

또는 원문보도에서 반론보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주장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언론기관은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언론의 자유에 터잡아 공익성과 진실성을 이유로 개인의 비위 사실이 나 위법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반론요구 조차 동일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원문보도에 대응할 실질적인 이익 내지는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문보도의 직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보도의 경위, 분량, 의도와 전체적인 보도내용의 논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기인식이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사항 중 학력에 관한 사항이 원문보도의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소갑 제4호증의 7, 13, 소을 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원문보도에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들, ○○상고층, 금융감독원 등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도를 일부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후에 게재하거나 원문보도시 당시 수사검사 등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반박내용을 함께 기사화 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게재되거나 원문보도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성, 게재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로는 별도로 자신의 주장이나 해명을 게재하도록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반박기사들의 크기, 위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들이 원문보도와 같은 공표의 효과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반론보도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 중 일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당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사회의 증폭된 관심에 편승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많게는 10여 회가 넘는 특집기사로 다루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앞서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그 분량이나 형식, 내용에 상당성을 결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신청인들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원문보도나 반론보도의 이유가 기사별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보도도 되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반론보도문은 특정한 원문보도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나(정간법 제16조 제4항), 그 구체적 내용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3)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원문보도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는 신청인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각 피신청인별로 위와 같은 핵심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이 추가 기술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개괄적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원문보도와 연관성이 없거나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문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원문보도에서 현재 신청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의 과거전력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자주 언급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현재에도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인상이나 암시를 주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가 신청인이 이용호와 같은 ○○상고 출신이라고 보도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용호의 주가조작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반박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이용호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이용호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에 대한 해명의 일부로 자신의 출신학교에 대한 사항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비록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그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피신청인들로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피신청인들의 취소재판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김대웅

판사 박인식

〈별지 1-1~1-4〉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취소재판보도 생략 - 편집자 주

## 3심 판결문

사 건 : 2004다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 여 ○ ○

피신청인, 상고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이 춘 원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판 결 선 고 : 2006. 11. 23.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론보도와 원보도의 관련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인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2.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

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원심이 ○○ ○○파와 조직폭력배에 관한 반론보도내용 및 수사압력에 관한 반론보도내용이 그 판시의 원보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보도가 없다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 한다)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2.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반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

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만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집행된 후의 항소심 재판과 같이 위와 같은 기회가 일응 이미 부여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속여 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신청인의 위 각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졌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20 판결),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인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인더스와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위 각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확정판결이 내려졌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1가합66319 판결)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들 반론보도내용들은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론보도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몰랐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위 반론보도내용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허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신청인이 허위임을 알

고도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를 배척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아울러 '신청인이 ○○인더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로비자금 제공사실과 관련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4733 판결에 관한 심리도 필요함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 대 희  
 대법관 김 영 란  
 주 심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이 홍 훈

□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6537)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박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8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33)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6537 정정보도등

원 고 :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대표자 장관 송 민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 승 기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규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PD수첩” 프로그램에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1) 피고는 2006. 7. 25.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약 55분 동안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

에서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은, 김영미 프로듀서가 2006. 7. 초경 소말리아 해적(이하 '이 사건 해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된 동원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원수산'이라 한다) 소유의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하 '이 사건 선원들'이라 하고 위 납치사건을 '동원호 사건'이라 한다)과 위 해적을 만나기 위하여 소말리아로 직접 찾아가 취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원들이 현재 매우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가족들도 위 선원들의 안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원들은 납치된지 100일이 지난 현재 까지도 해적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원고 및 동원수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해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상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2.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보도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원고가 지적하는 5가지 보도내용을 구분하여 각 그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당해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의 언론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언론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고의 제①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제①주장

이 사건 해적은 동원호를 납치한 직후부터 언론인들의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먼저 언론에 접촉하거나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를 취재 하였던 김영미 프로듀서조차도 이 사건 협상에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납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질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적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지금 정부에서는 해적들이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미 PD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그건 우리 정부가 동원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해적들은 언론을 끌어들여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 4. 26.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체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장면에 이어 2006. 7. 4.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납치범들이 동원호 관련 언론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면서 국내 여론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정책홍보팀 관계자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한 후, “그러나 현지에서 본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적본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곤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구식 라디오 한 대 뿐, 인터넷은 커녕 노트북도 처음 보는 듯 신기해했습니다. 외국채널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과연 해적단

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원보도’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①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원고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평가적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①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제②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제②주장

원고는 동원호 납치사건을 접하자마자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착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임하였기에 이 사건 해적과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것은 이 사건 해적이 소말리아가 매우 위험하여 협상인이 납치 또는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적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이유도 이 사건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 및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고 또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라 한다)과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어 각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하여 협상중개인을 파견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을 이 사건 해적이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사실적 주장과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의 부분에 관하여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중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제③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제③주장

원고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통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원수산과 이 사건 해적 사이에서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지원하였는바, 이슬람법정연대의 북진동향, 이들이 동원호 사건 해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영국인 협상전문가를 고용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돕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 판단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사건 참조).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사건 직후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접촉은 현지에는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도정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영사과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조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과도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과도정부의 수산부장은 지난 5월 초 지역 라디오를 통해 한국어선 나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소말리아 수산부장관 핫산 압셀 빠라가 현재 과도정부는 해적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고 과도정부는 납치된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과 AFP 동아프리카 담당기자인 알리무시가 “힘없는 과도정부가 발행한 조업허가권 때문에 한국 선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7월 1일자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사건 후 석 달이나 흐른 지금에도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원보도’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전인 2006. 7. 24. 원고에게 동원호 사건

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동원호 사건이 해외에서 자국민 납치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능과 허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가 이 사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방송 보도의 경위,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제④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제④주장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현지의 열악한 통신사정으로 인하여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적이 동원호 사건 이전에 납치하였던 다른 선박에 관한 협상도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러한 협상방법이 동원호 사건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어 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 해적단과 한국 협상단의 협상 과정은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3백여 명의 하라테레 마을에 단 3대 뿐이라는 유선전화기. 그런데 그나마도 연결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보였습니

다. 한번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라데레 마을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협상은 더더지고 있었습니다.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와 관련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협상 방법은 이 사건 해적의 다른 납치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관하여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중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 사. 원고의 제⑤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제⑤주장

원고는 2006. 4. 7.부터 이 사건 선원들이 석방된 2006. 7. 30.까지 협상장소인 두바이에 동원수산의 협상 대표와 함께 원고의 협상지원대표를 파견하여 동원수산과 협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다만 어떠한 국가도 돈을 목적으로 자국민을 납치한 납치범과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협상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원칙 때문에 원고가 협상의 전면에서 나서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는 납치단체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원고의 영사와 관계자가 피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협상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동원수산이다.”라는 말을 한 통화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끝자락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도 해적들과 직접 협상을 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동원수산이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 주체를 동원수산이라고 칭하면서 협상에 대한 책임도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 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는 해적에 의한 피랍3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건 해적과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원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동원수산에게 이 사건 협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⑤원보도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아. 인정되는 반론보도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제③원보도, 제④원보도의 각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중에서 위 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 중 원고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내에서만 반론보도가 인정이 되고, 이를 넘어선 원고의 의견표명 내지 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방송방법 및 방송내용은 별지 1 반론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 3. 피고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가 원보도인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하였거나,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고,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위 2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관한 것인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 별지 1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난 4개월 가까이 최선을 다해 온 노력을 매도하고 정부의 역할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납치 직후인 지난 4월 7일 정달호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두바이로 파견한 이래 협상지원대표들을 교체하면서 협상전략을 협의하는 등 충력을 경주해왔다.”라고 하면서 해적과 정부가 직접 협상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원칙이고 협상장소는 송금이 쉽다는 등의 이유로 해적들이 지정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은 그간의 협상 경과나 해적들의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원고의 반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가 원래의 보도 이후 나중에라도 상당한 정도의 반론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충실히 하였다면 그 후에 별도로 피해자가 원래의 보도에 관하여 다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반론보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피고가 자신의 텔레비전방송에서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③원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 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2006. 4. 26.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인 반기문의 발표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충분한 반론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2006. 4. 26.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동원수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동원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 사건이 해결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2006. 4. 26. 당시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었다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대하여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 몇 주일씩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도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대내외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이 창 경

판사 김 은 정

### 〈별지 1〉 반론보도문

#### 1. 방송방법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 2. 방송내용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6. 7. 25.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6. 4. 4.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위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공식협상문안을 하나 만들어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당시 동원호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별도로 동원수산 주식회사와 함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공식협상문안을 작성하여 소말리아 해적들과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는 몇 주일씩 소요된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2. 10.자 판결 (2006나28135)

##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2월 10일 파기 환송한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중 동아일보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아일보의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며,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가 지난 2001년 7월 4일과 5일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하의 보도 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당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기 후 2심 법원으로 환송판결을 내린 바 있다(1~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27~43면 참조).

과기 환송된 이번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 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 보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 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 6. 23.부터 7. 2.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

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1, 2 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취소재판보도 신청 등에 관해 “(구) 정간법 제19조의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심은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나28135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표자 처장 김 창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 태 구

피신청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0. 19. 선고 2001카기11669 판결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변론종결 : 2006. 11. 8.

판결선고 : 2007. 1. 2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8,896,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2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4 사설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신청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아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001. 7. 4.자 A 4면에 별지 2 기사(이하 '이 사건 1보도'라 한다)를, 같은 날짜 A 5면에 별지 4 사실(이하 '이 사건 2보도'라 한다)를, 2001. 7. 5.자 4면에 별지 3 기사(이하 '이 사건 3보도'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 다.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1)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5 내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01. 10. 19.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합된 하나의 반론보도문 게재 및 1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고, 이 사건 3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에 따라 2001. 10. 25.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2002. 7.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6. 2. 10.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 1, 2보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따라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3보도에 관한 청구는 독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 및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한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한정된다).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이 시행되기 전인 2005. 7. 27.까지 유효하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 그리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간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반론보도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하는 이상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1, 2보도는 국정홍보처장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이어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참조),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原報道,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보도를 ‘원보도’라 한다)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

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6. 23.부터 같은 해 7. 2.까지 10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가 자신들의 세무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향, 왜곡 보도이고, 정부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그 중 2001. 6. 28.자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들과 관련된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다음 2001. 7. 4.자로 이 사건 1보도를 게재하고, 같은 날짜에 사설로서 이 사건 2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실 및 성명 내용의 요지를 보도한 다음, 이러한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한 데 이어서, '사흘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 공격', '정부 일각서도 문제점 지적'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본문기사 내용으로 '정부 일각' 및 '한 관계자'의 반응 내지 지적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6월 28일자 성명에서 해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정부성명이 이처럼 남발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2보도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보도는 정부 일각 등에서 위와 같은 반응 내지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신청인의 거듭된 성명 발표가 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보도의 본질적 핵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 6. 23.부터 7. 2.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는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정간법 제19조의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소을 제11호증, 소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1. 11. 10.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 형식은 '기사 중 돌출 광고'에 해당하고 그 크기는 23.62단이며 1단당 광고단가는 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9,448,000원(40만 원 × 23.62단)이고, 한편 취소재판의 보도는 반론보도와 동일한 형식과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재판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9,448,000원(소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광고단가는 변함이 없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18,896,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미 상고심 판결 내용을 기사화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반론보도청구 인용판결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취소재판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승한  
판사 장일혁

〈별지 1~7〉 기사,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별지 8〉

국정홍보처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 7. 4. 자 제 4면에 게재된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하의 기사와 같은 날짜 제5면에 게재된 『오 국정홍보처장의 ‘퀘변’』 제하의 사설에 관하여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01. 10. 19. 이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1. 11. 20. 판결대로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사건에서 위 기사들은 언론사로서 국정홍보처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당사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비판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24.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